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82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최은석・이성권・송언석

김소희 • 박준태 • 김성원

박덕흠 • 박충권 • 주진우

이상휘 · 신성범 · 고동진

권성동 · 정연욱 · 최보유

정동만 의원(16인)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 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 (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제264조의3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전신송금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	범위)
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	
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u>따른 가상자산사업자</u>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	
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로서 관세의 부과 · 징수와 통관	
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
	른 전신송금 정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